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878호 2022. 9. 21.(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732호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

거창군 조례 제2733호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 5

거창군 조례 제2734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46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01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 17

거창군 고시 제2022-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2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297호 산불감시원(순찰감시원/초소감시원) 모집 재공고 24

거창군 공고 제2022-1299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3

거창군 공고 제2022-1303호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36

거창군 공고 제2022-1308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50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9월 21일

거창군 조례 제2732호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75
----------	---------

제출연월일	2022. 8. 1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모두 명시함(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다. 조례로 위임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 ~제7조)
 - 1)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
 - 2) 법령 규정: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운영, 제척·기피·회피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8.~7. 2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
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9월 21일

거창군 조례 제2733호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22-76
----------	---------

제출연월일	2022. 8. 12.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0. 7. 11.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나. 제정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 다. 1999. 1. 29.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 조례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으며, 또한 지방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12.~7. 29.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9월 21일

거창군 조례 제2734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제5호를 제10호·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설공원
묘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연장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4.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p> <p>5.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p> <p>② (생 략)</p>	<p>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u>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공설공원묘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면적(제곱미터)	장사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매장, 분묘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매장, 분묘, 봉안당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매장, 분묘, 봉안당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매장, 분묘, 봉안당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매장, 분묘, 봉안당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매장, 분묘, 봉안당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매장, 분묘, 자연장지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매장, 평장분묘, 봉안당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77
----------	---------

제출연월일	2022. 8. 12.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현재 공설공원묘지 내에 화장 유골은 봉안당에만 안치 가능하나 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유골을 봉안뿐 아니라 매장하여 평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이용 가능 장사시설을 “평장”을 포함하는 “분묘”로 개정하고 분묘의 형태 등 수시로 변경 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공원묘지 이용 가능한 분묘 형태 확대함(안 별표 1)

1) (현형) 봉분, 월평공설공원묘지만 평장 가능

⇒ (변경) 봉분, 모든 공설공원묘지 평장 가능

2) 봉분, 평장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 “분묘”로 용어정비

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등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5조제3항)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모두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7. 1.~7.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2년 9월 21일

거창군 규칙 제1346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국가·독립유공자확인증”을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 제5조제1항제4호”를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봉안시설은”을 “봉안당에는”으로 “매장시설에는 시신”을 “분묘에는 화장한 유골 또는 시신”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종전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는 봉분과 평장으로 한다.
- ② 분묘의 구조,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u>법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u></p> <p>제3조(사용료·관리비 감면 시 제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1. <u>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u> 2. <u>조례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독립유공자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u> 3. <u>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u></p> <p>제5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원칙) ①~② (생략) ③ <u>조례 별표 1의 봉안시설은 화장한 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매장시설에는 시신을 안치한다.</u></p>	<p>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u></p> <p>제3조(사용료·관리비 감면 시 제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1. <u>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u> 2. <u>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u> 3. <u>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u></p> <p>제5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조례 별표 1의 봉안당에는 화장한 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분묘에는 화장한 유골 또는 시신을 안치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6조(분묘의 구조 등) <신설></p> <p>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봉분):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3. 상석: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4. 비석의 표시: 일련번호, 매장하려는 시신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6조(분묘의 구조 등) ① <u>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는 봉분과 평장으로 한다.</u></p> <p>② <u>분묘의 구조,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봉분):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3. 상석: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4. 비석의 표시: 일련번호, 매장하려는 시신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47
----------	---------

제출연월일	2022. 7. 29.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위임된 분묘의 형태와 안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에 따른 분묘형태 및 안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1) 안치기준: (현행) 시신 ⇒ (추가) 화장한 유골
- 2) 분묘형태: (현행) 봉분 ⇒ (추가) 평장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1.~7.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

【 가조가야로 간판개선사업 정비시범구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거 창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일원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군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본 고시의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88~1131 일원
2. 구 역 : 【붙임1】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 ①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 이용 간판 원칙)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한해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약국은 1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가 20cm 이하인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약)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3. 이·미용업소는 지름 30cm, 세로 100cm 이하인 돌출 간판(사인볼 표시)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광고물의 형태·크기·색상은 건물 및 업소의 특성에 맞게 표시하되 주변 환경 및 인접한 타 광고물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③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조명과 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방식의 표시를 금지한다.
- ④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 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 수량, 크기 및 표시 방법은 본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간판은 층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1층 : 판류+입체형, 바(Bar)+입체형, 입체형
2. 2층 이상 ~ 5층 이하 : 바(Bar)+입체형, 입체형

- ② 간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가로폭의 90% 이내(세로기둥선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1층에 판류형 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로 길이는 층과 층 사이 벽돌 구조 벽면의 4/5 이내로서 최대 10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한 문자의 크기는 60c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4층 이상부터 층당 문자 크기를 5cm씩 크게 설치할 수 있다.
- ⑥ 상호·전화번호 등 각 문자의 전체 길이는 간판 또는 바(Bar) 길이의 4/5 이하로 하고, 판류형 간판의 경우 문자 크기는 간판 높이의 4/5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⑦ 4층 이상의 건물의 최상층의 1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형 - 폭 : 건물폭의 1/2 이내, 높이 : 최대 2m 이내
 2. 세로형 - 폭 : 최대 1m, 높이 : 건물 높이의 1/4 이내, 최대 10m 이내
 3. 문자 크기 : 최대 2m 이내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 방법) 돌출간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지하층 또는 6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 중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돌출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으로부터 최대 80cm(게시틀 포함 100cm) 이하로 돌출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는 70cm 이내, 두께는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건물에서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거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단, 고시 전에 심의를 거쳐 표시하였던 광고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등 기타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현수막은 군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정비시범구역 내에 설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설치 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디자인은 정비시범구역 내 타 광고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제12조(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본 고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1.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 등
2. 주변 여건 등의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 등
3. 공공목적 광고물 등

②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 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제3조의 정비시범구역 내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기하는 경우 본 고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및 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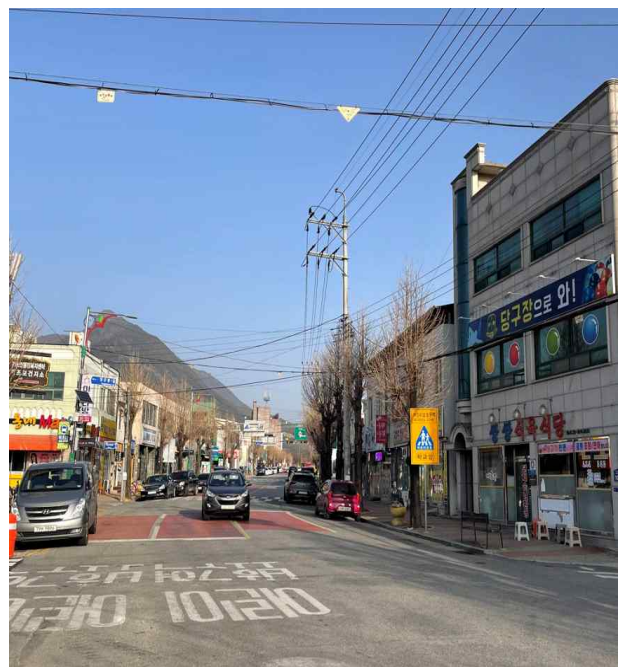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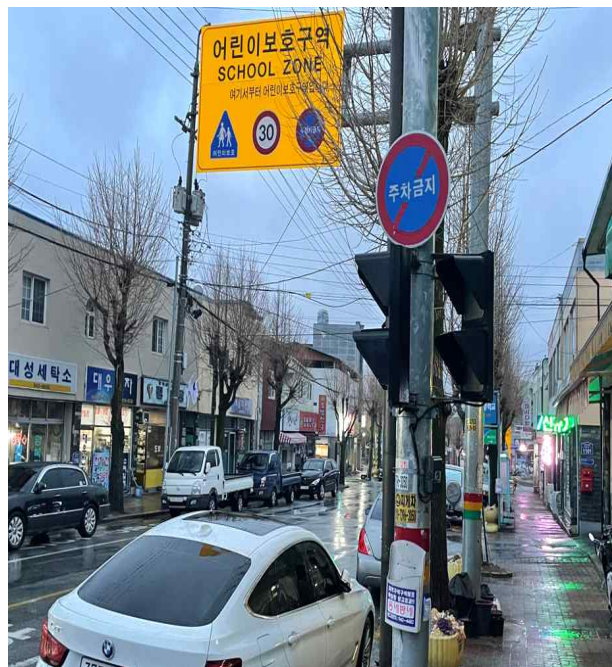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간 만료일부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종료 후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붙임1】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전 경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용전3길 74-24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1길 42 등 7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순찰감시원 모집 재공고 초소감시원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2. 09. 20.

거창군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산불감시원 : 72명
- 순찰감시원 : 60명

읍·면	합계	거창	주상	응양	고제	복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인원	60	-	10	-	10	-	10	-	-	10	-	10	10

※ 거창읍, 응양면, 복상면, 마리면, 남상면, 신원면은 접수인원 충족으로 접수마감
- 초소감시원 : 12명

읍면	합계	신원	남상	마리	거창	복상	고제	응양	가북	주상	가조	남하
인원	12	2	-	-	-	-	2	2	2	2	2	-
초소명	4호 감악산	5호 대룡산	6호 학동마을 뒷산	7호 취우령	8호 윤덕봉	11호 세발제	12호 석정마을 뒷산	13호 찬장리산	14호 금귀봉	15호 호두봉	16호 감토산	

※ 거창읍, 복상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은 접수인원 충족으로 접수마감

※ 각 읍·면별 모집 선발

2. 종사업무

- 담당읍·면 및 담당초소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내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농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뒷불감시
-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 산림보호법 위반자 적발 및 보고
- 그 밖에 산불방지업무 보조, 폭설·산사태 등 재난복구, 산림정화활동 등
- 초소감시원은 2인 1조 격일제 교대 근무(초소 미근무시 근무지 담당구역 근무)

3. 사역기간 : 2022 11. 15 ~ 2023 05. 15(사역시작일은 변동가능)

4. 모집방법

- 1차 : 서류전형(30%)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서류 검증
- 2차 : 실기시험(70%)
 - ※ 실기시험 : 직무수행력평가 실시(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 ※ 직무수행력평가 70점 이하는 탈락, 인원 미달시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 ※ 1, 2차 합산하여 최종선발

5. 응시자격

- 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 거주하는 자
 - ※ 초소감시원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
- 나.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병력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다.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라.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연속 근무 가능한 자
- 마.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휴대(운영)에 동의한 자
- 바. 관할 지역의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6. 우대조건

-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나.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에 해당하는자
- 다. 산림교육원 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마.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바. 산불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사. 드론자격증 보유자
- 아.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자(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7. 동점자의 선발 순위

-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나. 취업취약계층
- 다. 직무수행력 평가 성적 우수자
- 라.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주민등록등본 기준)

8. 응시 제외 대상자(※2022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수)

- 가. 날카로운 작업도구(기계톱, 애초기) 등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 뇌전증(간질), 정신질환 등)
- 나. 고교·대학교(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단,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 다. 공무원, 사학, 군인 등 공적연금 수령대상자
- 라. 과거 산림관련 사역 중 불성실자 및 중도 포기자
 -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등
- 바. 기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근로 시작일 기준)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인 2개 이상 사업(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신청자

9. 감점 대상자(※2022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수)

- 가.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반복 참여자) ※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채용
- 나.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 ② 4억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선발총점의 40%를 감점하고 채용

9.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토.일, 공휴일 제외)	직무수행력평가	원서교부 및 접수	합격자 발표
2022. 9. 20.(화) ~ 9. 22.(목)	세부일정 추후통보 ※ 읍·면 자체 일정 확인	거주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2022. 10월 중 개별 연락

10. 합격자 발표 : 실기검정 후 합격자에 한해 유선 혹은 SMS(문자) 통보

11. 임금 및 근무조건

가. 일일인부임 : '22년 73,280원 / '23년 76,960원

나.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야간 산불 포함) 반드시 출동 하여야 함(주 1일 휴무, 월 1회 연차)
- 사업특성상 휴일(토, 일) 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대체휴무함.
- 우천 및 강설 등 산불발생위험도가 낮을 경우 휴무 조치(임금 미지급)

12. 응시원수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나. 응시원서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13. 제출서류

공 통 서 류	선 택 서 류(해당자에 한함)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 필요 3.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경력 및 이력서 1부, 서약서 1부. 5.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6. 구직등록증 1부.	1. 취업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2. 운전면허증 및 본인소유 자동차등록증 3. 자격증·교육이수증명서 4.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 후 제출)

- ※ 서류 제출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가산점을 위한 선택서류 사본 미제출시 가점제외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산불위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지급 계획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우리 거창군에서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기능 등)를 수집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제외됨을 사전 알려드립니다.(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의거)
- 나. 응시자는 실기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면접 및 실기시험 불참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다.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본 모집공고는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시 별도 공고)
- 마. 실기시험에 따른 준비물 : 운동화, 체육복, 필기도구, 손목시계 등
- 바.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사. 본 공고에 의하여 모집된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작거나 같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자가 합격통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경력 및 이력서 1부.
 4. 서약서 1부.

- 순찰감시원
 초소감시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장 <input type="checkbox"/> 성매매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위기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갱생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22년 한시적용)			
취업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실업기간	20 . . . ~ 20 .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input type="checkbox"/> () 읍·면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시행기관명(), 참여기간(20 . . . ~ 20 . . .)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① 본 신청서는 본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본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2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경 력 및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성 별	남 · 여
	한 자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주요이력 (교육사항 포함)				
소지 자격증				
고 용 기 간	산불방지 관 련 근로기간			
	기 타 산림사업			
기 타				

※ 교육사항은 수료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첨부

서 약 서

서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경남 거창군 읍(면) 길/로
(세부주소) ()

응시분야

- 분 야 :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검증

주의사항

본 응시 분야는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채용 후 어느 정도 체력을 요하는 업무로서 체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과거 병력이나 본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응시여부를 판단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인은 동 응시분야 체력실기(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도착시간 측정) 테스트에 임하면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인의 체력에 맞게 응시할 것을 서약하고 아울러 무리하게 시험에 응하여 닥칠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100% 책임을 지며 거창군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성명 (서명)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1996-35(1996.08.29.)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1.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학교시설:경남도립거창대학)

○ 명 칭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98,064m²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학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96번지	98,064	98,064	621.43	1,620.61	거고 제1996-35호 (1996.08.29.)	

다. 층별개요

동별	층별	용도 구조	바닥면적 (㎡)	비고
주1	지상1층	교육연구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30.2	간호학실습실1·2, 사무실, 창고 등
	지상2층	교육연구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90.08	건강사정실습실, 관리시뮬레이션실습실, 탈의실 등
	지상3층	교육연구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00.32	BLS센터, 디브리핑룸, 탈의실 등
합 계			1,620.6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성 명 : 경상남도지사(경남도립거창대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09. 30.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8,738	98,738					
1	거창읍 대평리	1396	학	44,266	44,26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2	거창읍 김천리	164	학	54,472	54,47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일원)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2. 9. 20.

거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 입찰내용

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위탁기간	예정가격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일원	50	09:00 ~ 18:00	2022. 10. 23. ~ 2023. 11. 22.	15,524,000원

- ※ 기타시설 : 공중화장실 1개소, 주차관제시스템 1식, CCTV 7대, 가로등 13개소 등
- ※ 입찰금액은 13개월간 위탁금액을 기재하며, 부가세 포함 금액임
- ※ 정해진 주차구획 내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획 외로 주차를 유도하여 요금을 징수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됨은 물론 불법주정차단속 대상이 됨을 유의할 것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 납부(제출)기간 : 2022. 9. 22.(목) ~ 2022. 9. 29.(목) 16:00까지
 - 제출처 : 「온비드」 (www.onbid.co.kr)
-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 9. 30.(금) 10:00 거창군 경제교통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 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http://www.onbid.co.kr>)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운영 관련

- 위탁기간 : 2022. 10. 23. ~ 2023. 11. 22.(13개월간)
- 주차장 운영시간 : 09:00 ~ 18:00
- 주차요금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당	1일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 (주) 1.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 최초 30분으로 봄
 2.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3. 주차 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계약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위탁 계약기간 동안에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요금징수, 주차 이외의 상행위 발생, 차량손실 및 관리상의 시설유지관리(운영기간 중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했거나 소모품등에 한함)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관리수탁자에게 있으며, 거창군은 이를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진다.

4. 입찰참가 자격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 가. 공고일 현재 거창군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군이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문의하여 등록 후 입찰가능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주차장관련 수탁금 미납법인 또는 개인은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방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에 접속,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 (<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홈페이지 【입찰이용안내탭 또는 고객지원센터】 참고
-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에서 확인가능 함.
- 입찰시작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농협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칭은 「농협위탁」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금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의 집금계좌로 이체되고,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가 입찰참가자격 미달일 때,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 이상 입찰참여자 포함)와 계약 체결시에는 재입찰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1.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전까지 아래서류를 거창군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한다.
 -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단, 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실증명” 으로 같음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법인인감)
 - 수탁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영수증(주차장 운영개시일까지 제출)
- ※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합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이상 입찰참가자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이 미달일 경우 재입찰합니다.

12.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위탁료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낙찰자 자격상실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거창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창군의 입금계좌로 이체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주차장의 운영 개시 후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등록신청 및 수익사업 개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원본)은 주차장 운영 개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주차장 시설물 상태 및 주변도로, 교통여건,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현장 답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조례), 규정, 공고문등을 연계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비드 이용 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 입찰자는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안)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안)는 전자입찰 공고와 함께 거창군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례), 규정 확인 및 숙지사항
 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 → 현행법령검색
 나.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거창군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 교통담당(☎940-3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위탁관리계약서(안) 1부 끝.

응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주차장 운영 수지분석 없이 응찰할 경우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응찰에 앞서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반드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거창군에서는 부당요금 청구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사례 발생 시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해약 사유가 될 경우에는 위탁료 전액은 거창군에게 귀속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운영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계약서

거창읍 시가지 교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탁자 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을 “갑”이라 칭하고, 관리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관리수탁 대상 공영주차장의 표시)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50면
(별첨1 :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시설내역)

제2조 (관리수탁기간 및 운영시간)

1. 관리수탁기간은 2022. 10. 23. ~ 2023. 11. 22. 까지로 한다.
2. 공영주차장은 주간만 유료 운영(단,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한다.
단, 설·추석 연휴 기간은 무료 개방

제3조 (관리수탁사용료 및 납부방법)

1. “을”은 금원(금 원)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수탁 사용료반환)

납부된 관리수탁 사용료는 도시계획 사업시행 또는 주차장의 폐쇄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이행보증금)

1. “을”은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관리수탁 사용료의 10/100을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계약 불이행시 “갑”에게 귀속한다.
2.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6조 (관리수탁자의 임무)

“을”은 주차장의 유지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
(주차선 내 주차 유도, 월 주차 차량의 특정 주차면 장기점유 방지)

2. 주차장 구간 내의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3. 주차하는 차량 및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
4. 공중도덕을 행하는 행위 금지
5. 주차장 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6. 수탁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금지
7. 주차장법 및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8. 이용자에 대한 친절 봉사와 요금징수에 대한 설명
9. 요금징수원의 복장 통일(제복, 모자 등)
10.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11. 기타 민원 발생이 없도록 주차장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제7조 (돌발사태시의 대응조치 의무 및 경비부담)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돌발사태 발생 시 및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1. 차량의 주차장 진입 중지 : “갑”의 지시가 있을 시
2. 주차차량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 “갑”의 지시가 있을 시

제8조 (주차장 일시 폐쇄에 따른 관리수탁 사용료 감경)

천재지변, 침수 등 돌발사태와 “갑”의 지시에 의하여 주차장을 일시 폐쇄할 시는 그 기간에 대한 관리수탁 사용료를 감경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요금의 징수)

“을”은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요금 적용의 시간구분)

운영시간 중 주간(09:00 ~ 18:00)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제11조 (주차요금 감면)

“을”은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장의 표시)

1. “을”은 설치된 주차선 내에서 수시 선형을 보완하여 깨끗하고 명확한 주차선의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
2. 주차장 및 주차장 안내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교통 안전표시를 준용하고 조례를 준수하여 한다.

제13조 (제세공과금 및 운영경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운영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주차거부 금지)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1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호우주의보, 경보 발령 등 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을”은 시설물 및 주차 중인 자동차의 도난, 훼손, 화재 또는 침수 등으로 일어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업무의 지도 감독 및 보고)

“갑”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대행 업무를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장의 용도 외 제공)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제공코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주차장의 폐지)

“갑”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 납부된 관리수탁 사용료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차요금 변경 시 관리수탁 계약변경)

관리수탁 기간 중에 조례의 개정에 의거 주차요금이 변경 될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요금의 변경되는 비율에 의거 관리수탁 사용료(계약 이행 보증금 포함)를 산정하여 계약변경 한다.

제20조 (관리수탁의 양도 등 금지)

“을”은 제3자에게 관리수탁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조례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본 계약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에는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계약취소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

본 계약에 부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조건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해석에 있어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시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2022. 10. .

갑 : 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 (인)

을 : (인)

(별첨1)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시설내역

주차장명	면적 (m ²)	주차면수 (면)	기타시설
계	1,946	50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1,946	50	공중화장실 1개소 주차관제시스템 1식 CCTV 1식(7대) 가로등 1식(13개) 등

(별첨2)]

(제8조 제1항 관리)

회 수 주 차 권			
금		원정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군영 주차장에만 사용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아니함.			
거 창 군 수			

※ 전면 중앙에는 거창군 휘장표시

정 기 주 차 권			
금		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자	20	년 월 일
	자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정기 주차권은 위의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만 이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 주차권은 군영 주차장에만 사용			
3. 이 정기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거 창 군 수			

12cm

8cm

※ 전면 중앙에는 거창군 휘장표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행정예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명 :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산불발생을 신속히 인지하여 산불확산에 의한 산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3. 설치장소 :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37-4, 병곡리 산143 일원
4.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내 산림 / 24간 연속촬영·녹화
5. 시 행 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055-940-3474)
4. 행정예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10.(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2. 9. 21. ~ 2022. 10. 10.(20일간)
6.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주의사항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산림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방법
 - ※ 우편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 ※ 팩스 : 055-940-345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55-940-3474)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행정예고명	
	의견	
	기타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